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53
----------	------

제출년월일 : 2012. 01. 25.
제출자 : 충주시장

1. 제안이유

2011.7.29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10.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등을 추가하여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기능 확대(안 제3조)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 승인 추가
- 나. 위원회가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4조)

다. 수당규정 개정(안 제9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라. 다른 법령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의 : 법무계와 사전협의

라. 그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2011.11.4. ~11.25.) 결과
-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와 제21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인을 포함한 5인”을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을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인”을 “3명”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인”을 “2명”으로, “위촉 또는”을 “위촉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규정에 의거”를 “각 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3인중”을 “3명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인중”을 “2명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2호에 따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을 “위촉하려면”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후단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과 취업승인

제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5. 그 밖에 이 조례나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을 “담당”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급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를 “5급 이하 공무원, 담당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5급이하”를 “5급 이하”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조, 제5조, 제6조를 각각 제5조, 제6조, 제7조로 한다.

제4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5조(종전의 제4조)의 제목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장 및”을 “위원장과”로, “1차에 한하여”를 “1차에서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충주시의회의원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의회의원이면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이면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3항 중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를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으로,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 제2조의 제목 “(위원회의 회의등)”을 “(위원회의 회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결정에 있어서”를 “결정에서”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2이상”을 “2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와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이나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하는 자를 고발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참고인 또는 감정인”을 “참고인·감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을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로 한다.

제6조의2를 제7조의2로 한다.

제7조의 2(종전의 제6조의 2) 중 “2차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을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 “(위원회의 간사등)”을 “(위원회의 간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하게 하기 위하여”를 “행하려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공무원중”을 “소속공무원 중”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수당등)”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을 “충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중 “것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를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공직자윤리법 시행 규칙」을 따른다. 이때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 윤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 하여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제9조와 제21조</u> <u>에 따라</u> ----- ----- ----- ----- -----.</p>
<p>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u>1인을 포함한 5인</u>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3인</u>의 위원은 법관·교육자·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 <u>2인</u>의 위원은 충주시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p>제2조(구성) ① ----- ----- <u>1명을 포함한 5명</u>----- ----- <u>각 호에 따라</u> <u>시장이 위촉하거나</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3명</u>----- ----- ----- ----- ----- <u>제2조에 따른</u> ----- ----- ----- -----. 2. <u>2명</u>----- ----- ----- <u>위촉하거나</u> -----

현 행	개 정 안
<p>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u>각호의 규정에 의거</u> 선임한다.</p> <p>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u>3인 중</u>에서 선임하여야 한다.</p>	<p>-----.</p> <p>② -----</p> <p>-----</p> <p>-- <u>각 호에 따라</u> -----.</p> <p>1. -----</p> <p>-- <u>3명 중</u>-----</p> <p>-----.</p>
<p>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u>2인중</u>에서 선임하여야 한다.</p>	<p>2. -----</p> <p>----- <u>2명 중</u>-----</p> <p>-----.</p>
<p>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p> <p>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p>	<p>③ <u>제1항제2호에 따라</u> -----</p> <p>----- 위</p> <p>촉하려면 -----</p> <p>-----.</p> <p>제3조(기능) ① -----</p> <p>- <u>각 호</u>-----</p> <p>-----.</p>
<p>1. (생 략)</p> <p>2. 법 제8조제12항 <u>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u></p> <p>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p> <p><신 설></p> <p>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p>	<p>1. (현행과 같음)</p> <p>2. ----- <u>후단에 따른</u> -----</p> <p>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과 취업승인</p> <p>4.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p> <p>5. 그 밖에 이 조례나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p>

현 행	개 정 안
<u>정한 사항</u>	<u>정한 사항</u>
<p>② 위원회의 <u>관할</u> 대상은 다음 <u>각호</u>로 한다.</p> <p>1. 시 소속 <u>5급이하</u> 공무원 및 <u>관할</u> 공직유관단체의 임·직 <u>원과</u>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p> <p>2. 시의회 소속 <u>5급이하</u>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p>	<p>② ----- 담당 ----- --- 각 호-----.</p> <p>1. ----- <u>5급 이하</u> 공무원, 담당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p> <p>2. ----- <u>5급 이하</u> ----- -----</p>
<u><신 설></u>	<u>제4조(심사기준)</u> 위원회는 법 제9 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p><u>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u></p> <p><u>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u> 하되, <u>1차에 한하여 연임할</u> 수 있다.</p> <p>② <u>충주시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u>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p> <p>③ <u>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u>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p>	<p><u>제5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①</u></p> <p><u>위원장과</u> ----- ----- <u>1차에서만</u> -----.</p> <p>② <u>충주시의회의원과 소속공무원</u> 중에서 위촉·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의회의원이면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이면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p> <p>③ <u>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u>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p>

현 행	개 정 안
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u>잔임기간</u> 으로 한다.	----- ----- <u>남은 기간</u> -----.
<u>제5조</u>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u>통할한다</u> .	<u>제6조</u>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 ----- <u>총괄한다</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제6조</u> (위원회의 회의등)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u>결정에 있어서</u> 표결권을 가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제7조</u> (위원회의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결정에서</u> ----- -----. 각 호----- ----- <u>2 이상</u> ----- -----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와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이나 징계의결의 요구

현 행	개 정 안
<p>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p> <p>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p> <p>1. · 2. (생 략)</p> <p>3. 위원 본인이 <u>참고인 또는 감정인</u>으로 된 사항</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u>재적위원 수의 계산</u>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p> <p><u>제6조의2</u>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u>2차정례회</u>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 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하는 자를 고발</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u>참고인·감정인</u>-----</p> <p>④ <u>제3항에 따라</u> -----</p> <p>----- ----- <u>재적위원 수의 계산</u>에서 -----</p> <p>---.</p> <p><u>제7조의2</u> (연차보고서 제출) -----</p> <p>----- <u>2차 정례회</u>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p> <p>-----</p> <p>-----</p> <p>-----</p> <p>-----</p> <p>-----</p> <p>-----.</p> <p><u>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u> ① -----</p> <p>-----</p> <p>----- <u>행하려고</u> -----</p> <p>-----</p>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u>행하게 하기 위하여</u>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p>② 간사는 충주시 <u>소속공무원</u>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p>	<p>-----.</p> <p>② ----- <u>소속공무원</u> 중-----</p> <p>---.</p>
<p>제8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9조(수당 등) 충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그밖의 -----</p> <p>-----.</p>
<p>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u>것이외에</u>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p>	<p>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 <u>것</u> <u>이외에</u> 위원회의 운영에 -----</p> <p>-----.</p> <p>-----.</p>
<p><u><신 설></u></p>	<p>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이때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p>

관계법령

공직자윤리법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①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 체등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17조제2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거나 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의 신청을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9]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①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②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사기업체등에 대하여 처리하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취급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관의 범위와 제3항의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9]

제18조의3(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 후 일정한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후 1년간의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소속 사기업체등의 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내역서를 검토하여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퇴직공직자가 관여한 사건·사무 등 업무활동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업무내역서에 포함되는 내용과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